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01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김승수 · 김은혜 · 안철수  
이종욱 · 배준영 · 이종배  
진종오 · 김선교 · 안상훈  
김용태 · 엄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

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1.·2. 삭제 ② ~ ⑫ (생략)</p>	<p>1.·2. 삭제 ② ~ ⑫ (현행과 같음)</p>
--------------------------------	------------------------------------